

# 협력업체 행동 강령

## 서문

베바스토 SE와 그 계열 자회사, 즉 베바스토 SE가 직간접적으로 대주주 지분(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하 “베바스토”)은 글로벌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무결성, 윤리적 행동 및 규정 준수를 약속합니다. 베바스토의 내부 행동강령(이하 “내부행동강령(COC)”)은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하며, 존경받고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베바스토에 서비스 및/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모든 계약상의 파트너(이하 “협력업체”)는 베바스토의 성공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이들의 행위는 베바스토에 영향을 미칩니다. 베바스토는 협력업체와의 지속 가능하고 협력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의존하고, 핵심 가치를 공유할 때만 협력업체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자 하며,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의 일관된 관리를 통해 베바스토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베바스토는 베바스토의 협력업체가 본 협력업체행동강령(이하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에 명시된 모든 규정을 수락할 것을 요청합니다. 베바스토는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에서 모든 협력업체가 준수할 것을 기대하는 최소 기준을 설정합니다.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은 내부행동강령(COC)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선정된 협력업체의 등재뿐 아니라 신규 협력업체의 선정에 필요한 윤리적, 환경적, 사회적 기준 등의 추가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베바스토는 협력업체와 해당 협력업체의 직원, 나아가 협력업체의 하도급업체와 2차 협력업체까지도 해당 협력업체의 공급망에서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을 기대합니다.

베바스토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협력업체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평가의 대상은 환경, 노동 관행, 공정거래행위 및 지속가능한 구매이며, 나아가 위험 식별 및 감사 대상 사업장 선정에도 사용됩니다. 이에 협력업체는 이러한 평가 작업의 진행에 동의합니다.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에는 특정 국가에서 현지 법규가 우선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와의 약정은 계약조건이 규율하지만,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과 계약조건이 상충할 경우,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에 명기된 의무가 우선합니다. 베바스토는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보이고, 또 베바스토가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의 어떤 장 또는 조항을 협력업체에서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계약 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협력업체와 관계를 수립 및 유지하고자 합니다.

베바스토는 귀사가 협력업체로서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를 숙지하고, 양사의 우수한 평판이 양사의 업무적 무결성에도 달린 만큼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를 일상업무에서 고려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5월

# 목차

1. 사회적 기준 .....	3
1.1 인권 .....	3
1.2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	3
1.3 강제근로 또는 의무노동 금지 .....	3
1.4 아동 노동 금지 .....	4
1.5 근로시간과 보상 .....	4
1.6 차별 금지, 괴롭힘 금지 .....	5
1.7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	5
1.8 산업 보건과 안전 .....	5
1.9 공공 및 민간 보안 인력 배치 .....	6
1.10 토지, 수자원 및 산림 권리의 보호, 불법 강제 퇴거 금지, 소수자와 토착민 존중 .....	6
1.11 인권 옹호자 보호 .....	7
2. 환경 원칙 .....	7
2.1 환경 보호, 에너지 절감 및 천연 자원 보호 .....	7
2.2 친환경 재료, 자원 절약, 재사용 및 재활용 .....	7
2.3 사용 제한 물질 및 CO2 배출량 .....	8
2.4 재료 항목화 .....	8
2.5 분쟁 광물 .....	8
2.6 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수자원 보호 .....	9
2.7 유해 물질 및 폐기물 .....	9
3. 기업윤리적 기준.....	9
3.1 부패 방지, 뇌물수수 방지 및 자금세탁 방지 .....	9
3.2 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금지 .....	10
3.3 기밀 유지 .....	10
3.4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	10
3.5 인공지능 .....	10
3.6 제재 .....	10
4. 일반적 기준 .....	10
5. 보고 및 조치 .....	10
6. 감사 .....	11
7. 하도급 계약조건의 일치(flow-down) .....	11

# 1. 사회적 기준

협력업체는 모든 상거래에서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에 명시된 다음의 사회적 기준 조항의 기업 내 및 공급망 내 준수를 보장한다.

협력업체가 잠재적으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사슬에서 베바스토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내에 인권 실사를 위한 프로세스(예: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적절한 인권 실사를 조치하기로 약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7월 16일 제정된 공급망 내 기업 실사 의무에 관한 독일 법률(이하 “SCDDA”)과 같이 협력업체에 적용되는 국내 실사법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유엔이행원칙”) 및 관련 OECD 지침 및 원칙의 요구사항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협력업체는 상술한 실사법에 따라 협력업체는 회사의 규모와 매출액,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과 원산지 및 그 안의 원재료 포함 여부에 대해 특히 관련 위험에 따라 조치의 적절성과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 1.1 인권

협력업체는 인권 보호가 미진한 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지역의 사업장에서 인권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협력업체는 기본적 인권 침해가 야기되는 공모 상황 또는 담합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데 동의한다. 협력업체는 전체 공급망에서 인권 존중 책임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협력업체는 유엔 세계인권선언(1948), SCDDA 및 유엔이행원칙, 관련 OECD 지침 및 원칙 준수를 약속한다.

## 1.2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협력업체는 관련된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 가운데 모든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복수노조 정신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단체협상의 집합적 촉진을 약속한다. 나아가 협력업체는 모든 형태의 반노조 차별 행위를 회피할 뿐 아니라 조합원과 지도부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협력업체는 특히 다음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규칙(이하 “규칙”) 준수를 약속한다.

-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8 (제87호),

- ILO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949 (제98호),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1966년 12월 19일)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1966년 12월 19일), 그리고
- ILO 근로자 대표에 관한 협약, 1971 (제135호)

협력업체는 직원들에게 규칙에서 발생하는 관련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한다.

협력업체는 규칙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교육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단체 교섭을 위한 명확한 규칙과 기본 조건을 수립하거나 대체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규칙은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 1.3 강제근로 또는 의무노동 금지

협력업체는 강제근로, 채무노동 또는 기한계약 노동, 비자발적 노동 또는 착취적 징역노동, 노예제, 노예제 유사 관행, 극심한 경제적 또는 성적인 착취와 굴욕을 통한 직장에서의 노예 상태 또는 기타 형태의 지배 또는 억압, 또는 인신매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협력업체는 작업 시설에서 근로자의 이동 자유에 대한 어떠한 종류나 형태의 불합리한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된다. 각 근로자에게는 합의된 필수 고용 조건에 대한 문서를 해당 모국어 또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다른 언어로 기재해 제공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의 급여나 비용에서 원천징수 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협력업체는 신분증을 보류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타 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협력업체는 다음의 규칙 준수를 약속한다.

- ILO 강제근로 협약, 1930 (제29호),
- ILO 강제근로 폐지 협약, 1957 (제105호),
- ILO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1999 (제182호), 그리고
- ILO 강제근로 협약, 1930에 대한 2014 의정서

협력업체는 채용, 승진 및 해고에 대한 이행 절차를 명시하는 명확한 정책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협력업체는

사내에서 그리고 인력 송출업체 및 헤드헌터 등 제삼자와 함께 노동 및 채용 관행을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적절한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근로 조건과 고용 계약은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1.4 아동 노동 금지

협력업체는 전사적으로 그리고 공급망 내의 자사 협력업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 노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협력업체는 전 세계의 아동노동, 즉 의무교육 대상 연령, 해당국의 취직 최저연령 미달 연령, 또는 15세 미만 연령 중에서 더 높은 연령의 연소자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법정 취직 최저연령 이상이지만 18세 미만인 자는 야간근로 및 초과근로 등 건강 또는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협력업체는 이를 위해 직원과 입사지원자의 연령 데이터를 확인하고 특히 다음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규칙 준수를 약속한다.

- ILO 최저연령 협약, 1973 (제138호),
- ILO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1999 (제182호), 그리고
- UN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

협력업체는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자체 사업장과 공급망 내에서 상술한 규칙에 따라 아동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이 요건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및 합의에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협력업체가 사업장 내 아동 노동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 협력업체는 해당 아동을 고용에서 배제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5 근로시간과 보상

협력업체는 현지 법률 또는 업계 표준으로 정한 최대근로시간, 최소휴식시간 및 휴식기간 중 더 높은 보호 수준을 설정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 내에서 업무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속한다. 협력업체는 모든 적용 가능한 임금 및 복리후생 관련법, 초과근로시간과 법정복지의 대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 실시를 약속한다. 협력업체는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에 대해 정확하게 보상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각 급여기간에 대한 충분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임금 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협력업체는 다음의 규칙

준수를 약속한다.

- ILO (공업 부문) 근로시간 협약, 1919(제1호),
- ILO (상업 및 사무직 부문) 근로시간협약, 1930(제30호),
- ILO 동등보수 협약, 1951(제100호),
- ILO 단시간근로 협약, 1994(제175호).

협력업체는 정규직 고용자의 임금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이 적절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노동조합과의 협상 또는 다른 형태의 참여를 통해 합의되어야 한다.

협력업체는 최소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업계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야 한다.

## 1.6 차별 금지, 괴롭힘 금지

협력업체는 균등대우를 보장하는 가운데 인종, 피부색,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종교 또는 신념, 연령, 장애, 임신, 부모, 혼인 관계, 정치 성향과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및/또는 괴롭힘에 대해 이를 확립하거나 인정하거나 가담해서는 안 된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은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협력업체는 직장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권리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각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적절한 규정을 채택하고 이를 모든 직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특정 차별 및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협력업체는 이를 즉시 종식하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협력업체는 다음의 규칙 준수를 약속한다.

- ILO 균등 보수 협약, 1951(제100호),
- ILO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1958 (제111호),
-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그리고
-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협력업체는 특히 인사업무 결정 시 관리자와 직원이 차별과 괴롭힘을 인식 및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모든 직원은 정기적으로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도록 하며, 위반 사항 신고 절차를 예컨대 교육연수 등의 형태로 설명해야 한다.

## 1.7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협력업체는 전 세계 모든 직원의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그들의 차이점 또는 유사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관련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과 편하를 배제한 형평성, 공정성과 사회문화적 다양성, 포용성을 존중하는 작업 환경을 직원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나아가 협력업체는 성과와 능력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모든 행위, 의무와 참여에 대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가 되기로 약속한다.

협력업체는 특히 다음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규칙 준수를 약속한다.

- ILO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 1989(제169호),
- UN 토착민 권리에 관한 선언, 2007
- 개인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국제 행동강령, 2010.

## 1.8 산업보건과 안전

협력업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생산의 일관성과 근로자의 직업 유지와 사기를 지속시킨다는 개념을 지지한다. 따라서 협력업체는 노사 대표 뿐 아니라 회사 내 모든 직무 책임 수준을 망라하는 직원이 참여하는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적용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특히 작업자의 안전 유해요인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테스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식별, 평가 및 통제, 예방적 유지보수, 지속적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작업장에서 공인 및 인증된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예 : ISO 45001 또는 OHSAS 18001에 따른)을 구현 및 운영하는 것과, 베바스토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협력 업체는 잠재적 비상 상황이 야기하는 모든 종류의 영향을 식별, 평가 및 최소화하고, 각각의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

적절한 비상 대응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나아가, 협력업체는 특히 산업재해와 직업병, 산업위생, 기계 안전 방호, 위생, 식품 및 주택과 관련하여 현지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규정, 특히 다음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다.

- ILO 산업안전보건 협약, 1981(제155호), 그리고
- ILO 산업안전 보건 증진체계 협약, 2006(제187호).

협력업체는 업무 관련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발전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산업보건 및 안전에 관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산업 재해와 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접근 방식을 장려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근로자 안전보장을 위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사고율, 사망자 수 및 손실 일수에 대한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매년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근로자에 대한 모든 보건 및 안전 교육을 문서화하고 근로자가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는 현장 진료소 운영 또는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외진 의뢰 시스템 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1.9 공공 및 민간 보안인력 배치

협력업체가 자체 보안 인력을 사용하여 사업장 운영을 보호하거나 민간 보안 서비스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해당 보안 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민간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하거나 공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협력업체는 보안 및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안 인력을 투입해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는 투입될 보안 인력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을 적절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보안 인력을 채용할 경우, 협력업체는 해당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시 인권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민간 보안 인력 또는 공권력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협력적 맥락에서 이를 시정해야 하며, 피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력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 **1.10 토지, 수자원 및 산림 권리의 보호, 불법 강제 퇴거 금지, 소수자와 토착민 존중**

협력업체는 토지, 산림 및 수자원 권리를 존중하며 불법 또는 강제 퇴거를 하지 않고, 토지, 산림 및/또는 수자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협력업체는 특히 소수자, 지역 공동체와 토착민이 협력업체의 사업장 운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협력업체의 사업 활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에 동의한다. 협력업체는 특히 소수자, 지역 공동체 및/또는 토착민의 건강, 안전 및 생계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소수자, 지역 공동체 및/또는 토착민의 이주를 불법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들의 비자발적 이주에 불법적으로 이바지해서는 안 된다.

협력업체는 ILO 독립국의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 제169호에 규정된 활동에서 토착민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고지된 동의 원칙을 존중하고 토착민의 권리와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유산 뿐만 아니라 환경적 및 경제적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리 업무를 포함하는 토지, 산림 및/또는 수자원과 기타 천연자원과의 관계가 포함된다. 특히 협력업체는 다음의 규칙 준수를 약속한다.

-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 1989(제169호).

주민 이주가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는 이들에 끼칠 모든 부정적인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전의 생활 조건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보상해야 한다. 공급망 내에서 토지, 산림 및/또는 수자원 채취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협력업체는 과거에 잘못 사용된 토지, 산림 및/또는 수자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모든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에서 포용성과 문화적 적합성을 보장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특히 소수자와 토착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사회와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언제나 투명하게 소통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 1.11 인권 옹호자 보호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 창출 과정과 관련하여 인권 옹호자에게 잠재적 위험이 제기되는 경우, 협력업체는 인권 옹호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협박, 위협, 차별, 괴롭힘, 명예훼손 및 범죄화를 배격해야 하며 산하 협력업체에도 같은 조치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 2. 환경 원칙

협력업체는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에 명시된 환경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특히 생물 다양성 고려, 토지 사용 최소화, 삼림 벌채 자제 뿐만 아니라 수질 보호, 물 소비 최소화와 물관리 개선 노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생산 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는 환경 경영 시스템과 재료, 물품 및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에너지 성능 개선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가능하고 타당한 경우 언제나 태양열, 풍력, 수력, 조력, 지열 및/또는 바이오매스의 100% 녹색 전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 자원을 화석 에너지원과 같은 기타 비재생 에너지원보다 선호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이러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기회와 위험, 야망과 목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유능한 직원에게 시스템 운영 과업을 부과해야 한다.

### 2.1 환경 보호, 에너지 절감 및 천연자원 보호

베바스토는 환경적 책임을 일류 제품 생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존중하고 실천한다. 따라서 베바스토는 협력업체에 사업 운영에 있어 동일한 수준의 정밀 검토와 책임 의식을 기대한다.

협력업체는 환경 보호, 책임 있는 환경 에너지 감소, 천연자원과 기타 해당하는 부정적 효과와 관련된 사업장 및 시설 관리의 실시,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약속한다. 협력업체는 생산 공정과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물질 뿐만 아니라 조립식 제품이 각각 해당하는 환경 규정은 준수하는 것은 물론, 물론 이를 상회하거나 보완하는 환경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협력업체는 자체 생산 및 공급망에 대한 환경 관련 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환경 유해요인 및 그로 인한 잠재적 환경피해를 예방하거나, 입증 불가능한 경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현지의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환경 허가, 승인, 인증과 등록을 취득, 유지, 갱신 및 보관해야 하며 각각의 해당 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2.2 친환경 재료, 자원 절약, 재사용 및 재활용

베바스토는 협력업체가 에너지, 원재료, 물 등의 자원을 책임감 있게 절제하여 사용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협력업체는 수자원 보호를 위해 항상 해당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잠재적 취수 및 폐수 배출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베바스토는 특히 원재료 사용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협력업체가 전체 공급망을 포함한 제품의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는 베바스토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 협력업체는 특히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환경친화적인 대체 재료의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고, 예컨대 2차 원재료 또는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된 재료와 같은 재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제안해야 한다.
- 에너지 및 물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포함하여 환경매체로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나아가 베바스토는 협력업체가 환경 영향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협력업체는 자체적 사업장 및 공급망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재료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베바스토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2.3항 참조).

베바스토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2차 원재료, 재활용이 쉬운 재료, 재사용된

재료, 천연 소재를 활용한 하위 조립품 및 재료, 재료 효율성 및 폐쇄구조 재활용 이니셔티브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협력업체는 이러한 분야에서 베바스토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와 개선 사항 등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한다.

## 2.3 사용 제한 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협력업체는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협약(아래 정의 참조) 및 미나마타 협약(아래 정의 참조)에 따라 수은 및/또는 수은 화합물, 유해 폐기물 등 사용 제한물질(이하 “제한물질”)의 사용 및 배출을 줄이고, 파리 협정(아래 정의 참조)에 따라 이산화탄소(이하 “CO2”)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온실가스 의정서(아래 정의 참조)에 따라 CO2 배출량을 측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베바스토의 요청에 따라 협력업체는 기업 수준 및 제품 수준의 탄소 발자국, 즉 협력업체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협력업체는 베바스토가 요청하는 경우 예컨대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유리 등 배출량이 많은 원재료와 같은 재사용 원재료 사용분 견적 정보를 베바스토에게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협력업체는 유해배출물 및/또는 제한물질을 사용, 생산, 수집, 저장, 폐기, 수출 또는 수입해서는 안 되며, 각 경우에 모든 법적 요건 및 제한 값을 준수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중기적으로 탄소중립 제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베바스토와 관한 한 협력업체는 상술한 CO2 배출량 및 탄소 발자국 감축 의무와 제한물질의 사용 및/또는 배출량 감축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의 탄소/제한물질 제거 및/또는 탄소/제한물질 감축 인증서를 실제 CO2 배출량 또는 제한량/제한값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협력업체는 특히 다음의 규칙 준수를 약속해야 한다.

- 바젤협약, 1989.3.22,
-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와 세계자원연구소(WRI)가 공동으로 제시한 온실가스 의정서(이하 “온실가스의정서”), 1998,
- UN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2001(이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협약”),
- UN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2013(이하 “미나마타 협약”), 그리고
- UN 파리 협정, 2015(이하 “파리협정”).

## 2.4 재료 항목화

협력업체는 자신이 배송한 부품/구성품을 완전하게 재료 항목별로 목록화 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 또는 환경 보호를 위해 우려 물질의 사용금지, 사용제한 또는 추적성에 관한 모든 관련 법률의 준수를 약속하고, 특히 해당하는 적용 가능한 보고 구조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 2.5 분쟁 광물

협력업체가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이를 경유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및/또는 협력업체가 그러한 원재료를 자사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특히 탄탈륨, 주석, 텅스텐 및 금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형태의 분쟁지역에서 사용되는 광물 원산지 정책을 시행, 유지하기로 약속하는 반면, 투명성 규정 중 이 정책은 특히 분쟁광물에 관한 적용 가능한 시행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협력업체는 공급망 실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공급망에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을 적절한 정책으로 기술해야 한다. 특히 협력업체는 다음의 분쟁광물 규정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규정의 준수를 약속한다.

- EU 분쟁 영향 지역과 고위험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과 텅스텐, 그 광석과 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업체에 대한 규정 제2017/821호

협력업체가 3TG3(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의 공급자이거나 제품에 이러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공급망 내의 모든 제련소 및 정제소가 OECD의 규정을 준수하는 실사 절차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식별, 공개 및 평가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책임 있는 광물 보증 프로세스(이하 “RMAP”) 등의 확립된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생산 개시 시점에 책임광물 이니셔티브(RMI)의 RMAP 요건(상태=적합)을 충족하는 정제소 및 제련소에서만 이러한 재료를 공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협력업체는 늦어도 매년 3월 1일까지 분쟁광물 보고양식(CMRT)을 입증 자료로 제출한다.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제련소 또는 정제소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베바스토는 협력업체에 장기적으로 베바스토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망에서 RMAP 비준수 제련소 및 제련소를 제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베바스토는 희토류, 백금, 팔라듐,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흑연, 리튬, 코발트, 크롬, 운모, 3TG, 강철, 유리, 플라스틱, 가죽 및 천연고무와 같은 특정 핵심 원재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협력업체가 책임 있는 채광 보증을 위한 이니셔티브(IRMA)의 인증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 2.6 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수자원 보호

협력업체는 자신의 기업 활동이 생물 다양성과 물, 토양 및 대기의 질을 해치는 자연 생태계의 불법적인 전환에 이바지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삼림 벌채에도 다 같이 적용되며, 삼림 벌채는 주로 천연림을 농지 또는 기타 토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업체는 또한 적절한 공급망 실사를 해야 한다. 협력업체의 제품 가치사슬에 천연림 또는 기타 자연 생태계의 전환 위험 또는 생물 다양성, 물, 토양 및 공기의 질과 관련된 위험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는 자연의 가치와 문화적 가치의 보호를 포함하여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장기적인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실사를 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지표/토양, 물 및/또는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입물의 환경 적합성 및 토양 손상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협력업체는 제품 조달 및 제조 공정에서 담수 및/또는 해수의 품질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물 소비를 최소화하며, 물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적 및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7 유해물질 및 폐기물

사업장 내에서 저장 또는 처리되거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및 기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적절한 식별 및 라벨링을 수행하고 적절한 저장 장소와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대기 및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및 기타 유해한 영향과 같은 이러한 물질로 인한 유해요인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로 방지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적절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및 절차를 수립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을 신중하게 분류하고, 적절하게 수거, 저장, 처리 및 폐기해야 한다. 나아가 협력업체는 폐기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3. 기업윤리적 기준

협력업체는 모든 비즈니스 거래에서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의 다음의 기업윤리적 기준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 3.1 부패 방지, 뇌물수수 방지 및 자금세탁 방지

협력업체는 모든 비즈니스 상호작용과 거래에 있어 최고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약속하며, 특히 협력업체는 적용 가능한 모든 부패방지법, 특히 미국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과 영국 뇌물수수금지법(U.K. Bribery Act)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패방지법의 준수를 약속한다.

협력업체는 협력업체나 그 자회사가 특히 뇌물, 부패, 부당 취득, 횡령 및 자금 세탁과 관련하여 형사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행동에도 가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협력업체는 제삼자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약속, 제안, 승인, 제공 또는 수락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모든 종류의 뇌물 또는 기타 수단에 관여하지 않고 나아가 협력업체의 자회사도 관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원재료 광물 협력업체는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의 원칙에 따라 대금 지급 명세를 공개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 3.2 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금지

협력업체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홍보와 경쟁에 대한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협력업체는 이해 상충을 피하고, 위조 부품에 기여하거나 수혜를 입지 않도록 자제하며, 제품 적합성 및 제품 안전, 반독점,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에 관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3.3 기밀 유지

협력업체는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베바스토가 협력업체에 공개한 모든 영업비밀과 기타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협력업체는 모든 재정적 책임과 관련하여, 그리고 베바스토와 체결한 비공개 약정 또는 베바스토와 체결한 계약에 포함된 비공개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모든 사업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 **3.4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협력업체는 베바스토와의 비즈니스 관계 과정에서 습득한 개인 데이터를 전적으로 해당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보안법과 규제 요건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모든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에는 등록 가능한 재산권(예: 특허, 상표, 디자인), 도메인, 저작권 및 공정거래 요건이 포함된다. 나아가, 협력업체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용권의 보유를 보장해야 한다.

### **3.5 인공지능**

인공지능(특히 머신러닝 및 딥러닝)을 개발 및/또는 사용하는 협력업체는 인공지능 적용 시 책임 있는 사용 및 취급, 설명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는 인간이 AI 개발의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기회와 위험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한다.

### **3.6 제재**

협력업체는 모든 적용 가능한 국가적 및 초국가적 제재 및 무역 금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는 제재 위반에 관련된 위험을 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 **4. 일반적 기준**

협력업체는, 특히 협력업체의 사업장 및/또는 공급망에서의 사업 운영 및 제품과 관련하여,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모든 관련 법률, 규정과 베바스토와의 약정 준수를 보장한다.

협력업체는 직원이 내부 고발자 시스템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본 행동 강령에 명시된 원칙에 대한 위반 사항을 익명으로 지적할 수 있고 보복성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5. 보고 및 조치

협력업체는 자신의 사업 영역 및/또는 공급망에서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적절한 구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위반이 확인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협력업체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해 베바스토에 통지해야 한다.

- 베바스토 내부 고발자 핫라인: <https://www.bkms-system.com/webasto> 또는
- 이메일: [compliance@webasto.com](mailto:compliance@webasto.com)

베바스토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업체는 베바스토가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에 명시된 규칙, 법률 및 원칙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베바스토에 전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협력업체는 특히 베바스토가 제시하는 정보공개 설문지에 답변해야 하며, 이때 협력업체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완전하고 진실한 답변과 함께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력업체의 자체 사업 영역 또는 협력업체의 공급망 내에서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에 명시된 의무 위반 행위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종료될 수 없는 경우, 베바스토는 협력업체 및/또는 관련 제삼자와 협력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위반 행위를 종료하거나 그 심각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정조치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이다. 이때 협력업체는 최선을 다해 베바스토를 지원해야 한다.

베바스토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업체는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에 정의된 바에 따라 베바스토의 기준 및 기대치에 대한 교육연수 및 추가 교육에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베바스토는 협력업체가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를 위반한 후 정해진 시한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협력업체와의 납품 관계를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6. 감사

베바스토는 합리적 수준의 사전통지를 한 후 세계 각국의 모든 협력업체 사업장에서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감사는 해당 사업장의 정상 영업시간 중 베바스토의 재량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베바스토는 협력업체의 사업 운영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장 방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베바스토는 또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을 실시할 권리를 보유한다. 단, 이러한 외부감사인은 베바스토라 하더라도 해당 감사 결과 중 협력업체행동강령(SCOC) 관련 부분에 대한 정보만을 습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밀유지 서면 약정에 의한 비밀 유지를 사전 확약해야 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러한 감사는 사업장당 12개월마다 한 번씩, 그리고 협력업체당 12개월마다 4개 이하의 사업장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감사의 이유가 있는 경우 제한이 부과되지 않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유에 대한 자격 부여는 합리적인 재량적 결정에 의한다. 감사 중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의 조항으로부터 유의미한 편차가 확인되지 않는 한, 감사 비용은 베바스토의 부담으로 한다.

## 7. 하도급 계약조건의 일치(flow-down)

협력업체는 또한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하도급업체, 2차 협력업체와 기타 보조자에게도 부과하고, 그들이 베바스토가 협력업체에 대해 보유하는 것과 최소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에 서명함으로써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의 조항을 준수하고 본 협력업체행동강령(SCOC)와 동일한 수준의 각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정책을 시행하고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한글 번역본은 참고용이며, 법적인 효력은 영문본에만 있습니다. 영문본에 사인하시기 바랍니다\***